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명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는 2019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지원 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로 서울특별시가 대안 교육기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